



충남형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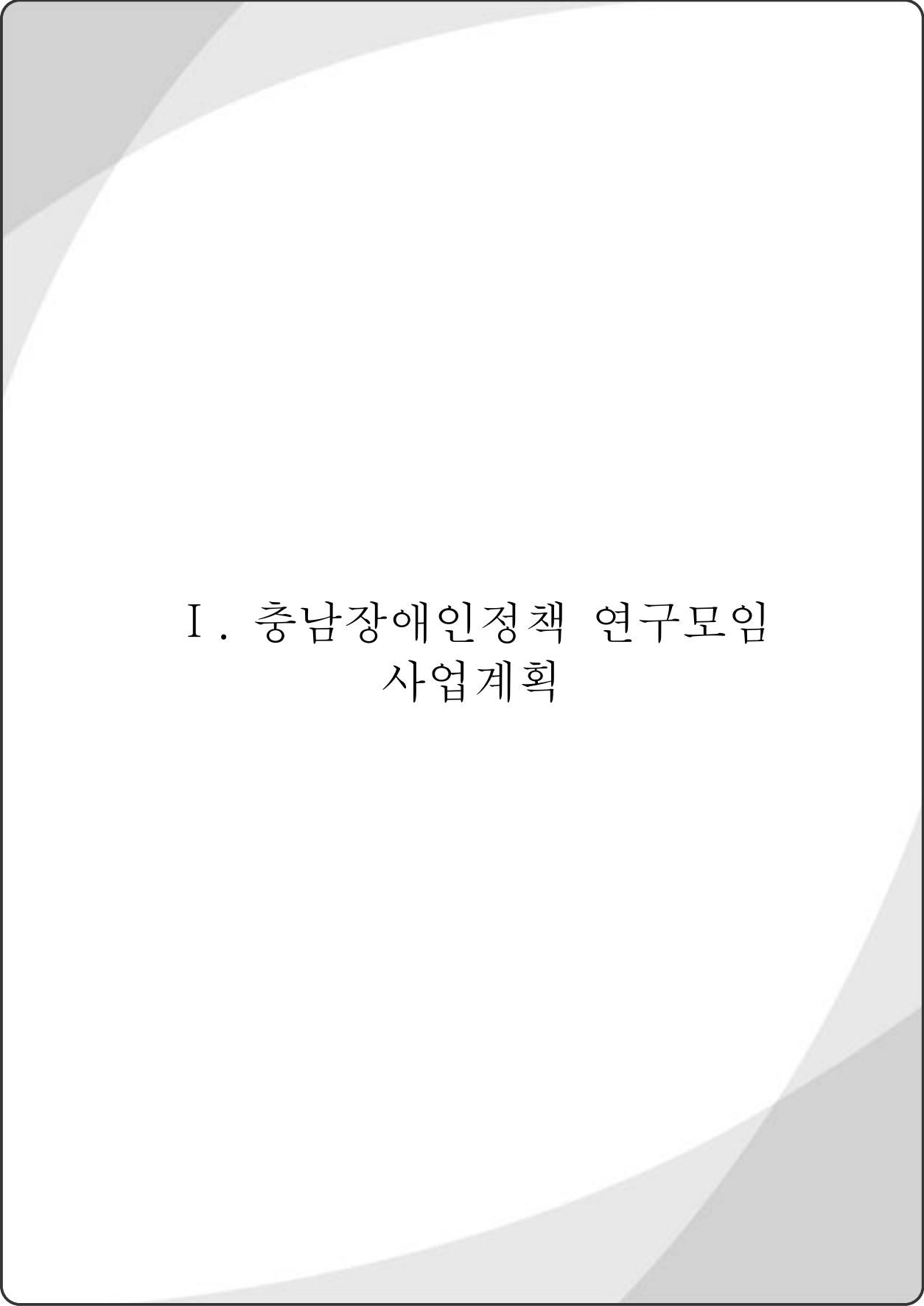
충청남도장애인정책 연구모임

목 차

I . 충남장애인정책 연구모임 사업계획	3
-----------------------------	---

II . 충남장애인정책 연구모임 활동보고	9
------------------------------	---

III . 충남장애인 영역별 연구결과	16
----------------------------	----



I . 충남장애인정책 연구모임 사업계획

1. 추진방향

- 충청남도 장애인정책의 실태파악
-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 정책분류를 통한 사례 분석
- 대안적 해결의 관점에서 갈등예방 및 해결 방안 도출
-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등과 현재 충청남도 장애인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기주도적 전략 수립마련 방안 연구
- 연구회 구성원 상호간 연구,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통한 동향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가 및 활동가를 활용한 연구회 운영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남장애인정책 연구회
- 사업기간 : 2065년 7월 ~ 11월(5개월)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재활에 대한 방안
 - 장애인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독립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장애인이동서비스 제도 개선
 - 장애인의 사회복귀 현장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3. 세부 사업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도의회 의원과 가게의 장애인 전문가와의 합동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안을 도출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및 활동지원
 - 연구회 구성 발족 모임 및 정기모임

2)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현안의 실태조사 분류

- 사업개요 : 장애인체육 현안의 실태조사 및 분류
- 사업내용 : 전문가 활용 연구 수행

3) 세미나 개최

- 사업개요 : 장애인의 사회복귀 현장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 사업내용 : 유형별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

4) 발간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4. 사업 추진일정

- 2016. 6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 2016. 7 : 연구회 발족식 및 정기모임 개최
- 2016. 7 ~ 8 : 장애인 정책 실태 조사
- 2016. 9 ~ 11 : 정기모임
- 2016. 11 : 세미나 개최 및 워크숍 개최
- 2016. 12 : 보고서 발간·배포

5. 기대효과

- 道 관계관, 전문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道の회 역량강화 성과 창출
- 충청남도 장애인정책 실태조사 및 분류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문제점 파악
-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세미나를 통한 지방정부 주도의 인식개선 효과

7.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3,000	
연구모임 활동비	1,500	○ 연구모임 발족 및 간담회 - 1,500,000원×1식 = 1,500,000원
현황조사 및 분석	500	○ 자료조사 및 분석 - 500,000원×1식 = 500,000원
세미나 참석 및 워크숍	500	○ 세미나 참석 및 워크숍 - 500,000원×1식 = 500,000원
보고서 인쇄	500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500,000원×1회 = 500,000원

Ⅱ. 충남장애인정책연구 활동보고

1. 충남장애인정책 연구모임 충청남도의회 등록

1) 연구회 등록

- 2016년 7월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이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2016년 12월까지 활동을 전개함

2) 연구회 사업계획

- 道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가 참여 과제 수행
- 道 장애인정책을 위한 세미나 참석
- 워크숍 개최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2. 도 장애인정책을 위한 연구모임 개요

- 일 시 : 2016. 7. 9(목) 16:00
- 장 소 : 천안시청 도정협력실
- 참석인원 : 9명(도의원 3명, 외부전문가 6명)
- 안 건
 - 연구모임 회원 상호간 상견례 및 구성 안내
 - 장애인정책연구 사업계획(안) 검토 및 추진방안 협의

3. 도 장애인정책을 위한 1차 연구모임 내용

1) 도 장애인정책을 위한 연구모임 창립총회 개최

-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도의 장애인정책 실태 파악을 통한 잠재요인을 유형분류가 필요함을 공감
-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의회, 충청남도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필요

2)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협의 결과

- 충남장애인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 필요
- 충남장애인정책에 대한 현안 파악 필요
- 다양한 충남장애인정책의 현안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모임 사업추진 제의
-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활동 필요

3) 회의결과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재활에 대한 방안
- 장애인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독립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장애인이동서비스 제도 개선
- 장애인의 사회복귀 현장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 연구 보고서 발간·배포

홈 > 전국 > 대전 · 충남

매일~유명리가 만화 무료감상 >>

충남도의회, 장애인 정책 기능과 역할 재정립

《충남=뉴스1》 박현석 기자 | 2016-07-20 15:05 송고

기사보기

네이버의견

f 좋아요

공유하기

0

트윗

카카오

인쇄 | + 확대 | -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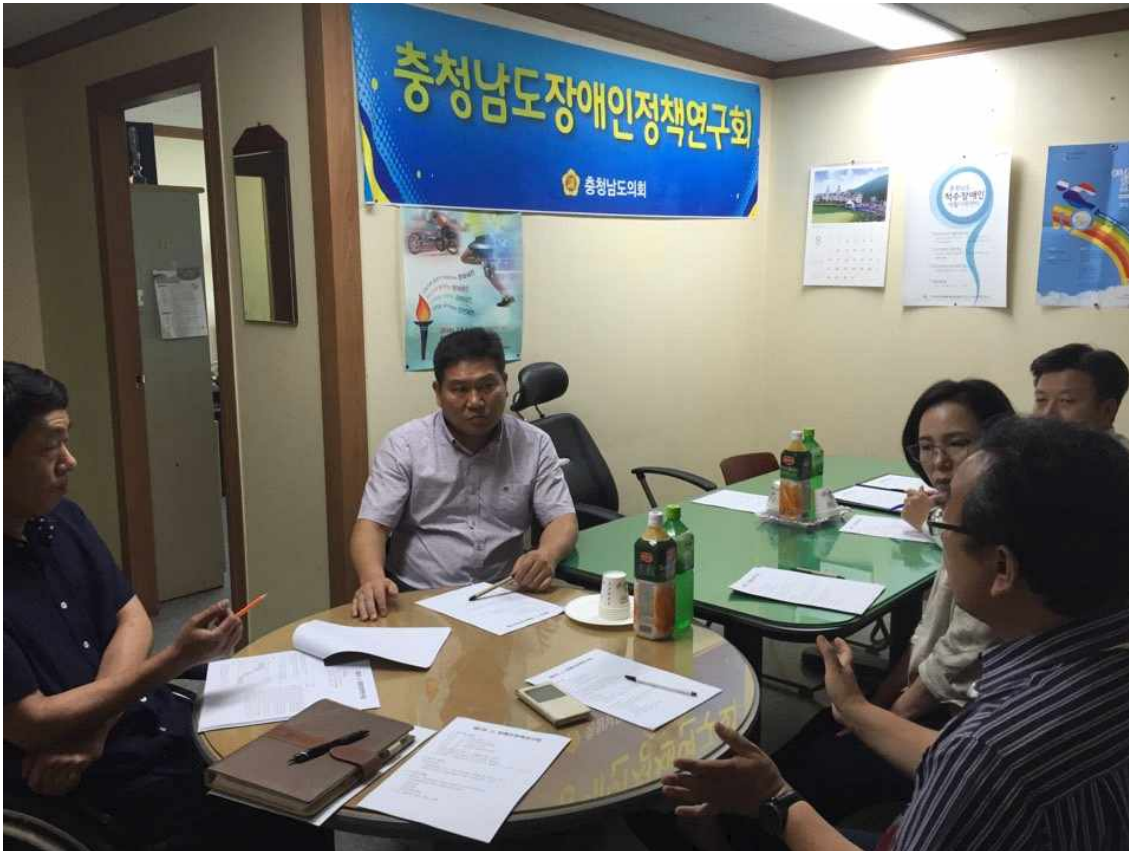
충청남도장애인정책연구회 ©News1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연 의원을 대표로 한 '충남도 장애인 정책 연구모임'을 구성, 도내 장애인 정책을 되짚고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4. 도 장애인정책을 위한 2차 연구모임 내용

- 일 시 : 2016. 8. 12.(금) 16:00 ~ 18:00
- 장 소 : 충청남도척수장애인협회
- 참석인원 : 5명(도의원 2명, 외부전문가 3명)
- 연구 과업
 -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방안의 제시
 - 충청남도 내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시각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 훈련 중심으로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제시
- 연구내용
 - 분야별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의 다각적 실태조사
 - 돌봄지원(활동지원, 가족지원서비스)
 - 주거지원
 - 고용지원
 - 성년후견인제도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충청남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도출



5. 도 장애인정책을 위한 3차 연구모임 내용

○ 일 시 : 2016. 11. 11.(금) 18:00 ~ 24:00

○ 장 소 : 테딘리조트

○ 참석인원 : 5명(도의원 2명, 외부전문가 3명)

○ 연구 과업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재활에 대한 방안 방안 제시
- 장애인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결과 도출
- 도립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결과 도출
 - 시각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 훈련 중심으로
- 장애인이동서비스 제도 개선 대안 제시
- 장애인의 사회복귀 현장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세미나 참석

○ 연구내용

- 발달장애인 자립 및 재활에 대한 방안
 - 발달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 장애인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방안
 - 도 사업공모 시 네트워크 방향 제시
-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
 - 전환재활센터의 기능 추가
- 장애인이동서비스 제도 개선
 - 타 시도의 우수운영 사례 제안
- 장애인의 사회복귀 현장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 세미나 참석에 따른 의견 교류



Ⅲ. 충남장애인정책연구 결과보고

Ⅰ. 발달장애인 자립 및 재활에 대한 방안

1.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 관련 주요 이슈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평생교육 지원체계 부족최근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촉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임. 그러나 성인기 자립생활과 평생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음.

시행령 제12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이 되어야 되어 있음.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세분화가 되지 못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4). 발달장애인은 학령기가 지난 후 주간보호센터, 생활시설 등을 제외하면 갈 곳이 적절하지 않음.

충남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지역사회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논의가 되었음. 논의된 내용(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4: 44)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학령기 발달장애인 지원에 집중을 두고, 성인기 발달장애인 지원이 거의 없음. 또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취업을 통해 얻어지는 부분이 가장 크고, 취업을 통해 문화까지 연결됨.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이 있으나 고용유지가 낮다는 문제점과 학령기 교육만으로도 어려움이 크므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평생교육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재 평생교육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발달장애인의 교육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수준을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 프로그램과 전문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함. 즉,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장애 전문교사가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임. 따라서 특수학교를

졸업 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은행, 대중교통 이용 등 사회성 교육, 직업훈련, 의사소통기술 등의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 후 배움의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평생교육을 위하여 오픈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음. 지적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오픈 칼리지)은 대학 내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생애강좌를 마련하고 대학 내 생활실무와 관련된 학과와 연계하여 실무 지향적 수업(축구, 여가, 컴퓨터 한자, 사회체육, 대인관계기술, 철도이용, 병원이용, 피부미용, 애완동물다루기, 여가·안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적응력과 자립심을 향상시키고 있음. 이를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지적장애인의 발달가능성 보장, 지적장애인의 고용가능성 보장하고 있음(安藤 忠, 建部 久美子, 安原 佳子, 2001; 建部 久美子, 安原 佳子, 2001).

2. 발달장애인 정의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한정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은 자 등의 단서가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유형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만 정의하고 있음. 장애유형 중 뇌병변 장애의 원인 출생 전, 출생 중이나 출생 후 몇 년 내에 일어나는 뇌손상에 의해 생기는데, 뇌의 비정상적 발달(발달성 기형)과 뇌 발달 과정 중 일어나는 신경학적 손상으로 나누어짐. 이로 인하여 외적 운동기능 손상을 동반하므로 영유아기 초기에 발달을 평가하여 가장 먼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발달장애 중의 하나임(최복천외, 2013). 법률 내에 장애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배경은 뇌병변장애아동의 부모가 양육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제한 때문이라고 추측됨.

특히, 중증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경증보다 일상생활, 교육, 치료 등에서 더 많은 지원욕구와 필요성이 큼. 이에 따라 만3세 이전 아동에 대한 교사, 의사, 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조기개입을 통한 발달지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함. 또한 가족은 의료·재활영역, 경제적 영역, 양육·돌봄

영역, 교육적 영역에서 경증보다 어려움이 큼.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의 역할 및 정체성 확립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충남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법률과 조례에서 명시된 주요사업을 비교해본 결과,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상담지원 등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음. 충남의 경우, 아직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았으나 설립될 예정임.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차별화된 기능재정립이 필요할 것임. 더불어 지역사회 복지체계 중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과의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발달장애인지원법률 34조 ②항에 따르면,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편,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지원
-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지원
- 6)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해외 발달장애인 양육지원

미국의 가정방문을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다양한데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대상아동연령은 출생에서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주요목적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증진, 가족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부모의 역량강화 등에 있음. 서비스 제공빈도는 주1회, 전문가의 학력은 학사 소지자 혹은 학사관련 소지자이며, 사회복지사, 공중보건 간호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음.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PAT(Parents as Teachers)프로그램은 가족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생후 4개월부터 최소 1년에 한 번씩 언어, 지적발달, 사회 및 정서 발달, 신체발달 등 전반적 발달검사를 실시함. 개별적으로 가정방문하여 양육 가이드를 제시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후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더불어 가족 간의 그룹모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영유아 가족의 보호요인 및 긍정적 변화를 강화함(조윤경·김태영·조혜희, 2013).

호주는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에 대하여 사회적 권리보장 및 돌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찾아내서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가 일과 돌봄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가족 휴식서비스(respite services)를 지원하고 있음. 주 요서비스 유형은 자신의 집(own home-based)과 위탁가정(host family)에서 제공, 레저, 레크레이션 활동에 대해 비슷한 연령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료지원(peer support), 집에서 벗어난 문화활동 및 숙박휴식 프로그램, 휴식캠프,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임상지원, 가족상담 등 다양하게 가족의 욕구에 맞는 유연성 있는 제도를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최복천 외, 2014: 305-307).

시사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지원되어야 함. 생애주기에서 영유아기는 매우 중요하며, 가족에게 가장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미국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의 경우, 발달장애인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가정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을 통한 생태학적 접근은 매우 유용한 지원 전략으로 생각됨. 발달장애에 진단 및 조기개입이 가능하며, 부모 혹은 가족의 역할에 대한 교육은 발달장애 영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그 외에 의사소통 및 언어능력 증진, 읽기기술 증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부모의 돌봄, 부양부담 완화 등의 서비스 성과를 얻을 수 있음.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즉, 사회통합을 위해 개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고 있음. 직업재활기관에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음. 직업관련 기관의 규모 및 특징은 1,000여개의 능력과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두고 있음. 그리고 장애인 생활지원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권익옹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또한 방과 후 활동지원,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공방운영, 거주배치 및 중동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여가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유점룡 외, 2010). 가능한 능력에 맞게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제공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독일은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해당하는 10학년 부터는 장애학생들도 직업준비와 전환교육 과정에 들어감. 성인의 나이에 맞는 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화기술, 직업소양, 독립성 등이 중요한 목표가 되며 인격과 사회관계, 활동, 주거, 직업, 여가활동 등을 배움. 3년의 직업준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실제 주거생활 훈련이나 독립성 훈련, 여가활동, 우정과 파트너관계, 성생활 등을 배움. 직업훈련과정을 마친 후 직무를 맡을 수 있음(장애인부모회, 2015).

호주의 장애인 평생교육도 통합과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비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임. 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평생학습차원에서 단순히 일터로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 생생한 교육복지의 장을 제공함. 지적장애인을 위한 개방대학의 교육내용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생활에 필요한 것, 학생이 희망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장애인직업센터에서는 장애인직업카운셀러가 중심이 되어 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준비훈련, 담당부서개발지원사업, 직업강습, 직업적응지도, 고용주의, 고용관리 등을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유점룡 외, 2010).

이러한 국외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으로부터 우리사회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발달장애인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지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되어야 함.

6. 충남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충남의 발달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양적 확대로 충남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복지에 특화된 전달체계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들 수 있음. 그런데 충남은 타지자체와 비교할 때 양적으로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열악한 광역지자체임. 서론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전국에 총 60여개의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가운데, 경남 20개, 경북 11개, 제주 2개, 충북 5~6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음. 그러나 충남지역은 광역수준의 1개 센터만 있으며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음. 이는 충남의 발달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양적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타당성을 제공해 주고 있음.

또한 충남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충남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시기적절하게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주변에 적절한 치료·교육시설이 없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리고 충남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운영,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10점 만점에 평균이 각각 8.79점, 8.74점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따라서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급히 개소되어야 함.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 및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단일화된 창구에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해주어야 함. 조사결과,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은 1순위는 ‘전 생애에 걸친 원스톱 관리 서비스’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장애인의 능력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16.8%로 파악됨.

최근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소와 관련해 전달체계의 중복이라는 지

적이 있을 수 있으나 충남의 발달장애인복지 전달체계나 서비스 공급 총량을 고려해 보면, 부족한 실정이므로 서비스공급총량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로 법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발달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충남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시·군차원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본 연구의 조사결과, 발달장애인가족들은 충남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어떠한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발달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확대구축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전달체계 구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요구됨.

시·군 전달체계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할 것인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함. 왜냐하면 두 센터를 동시에 시군마다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설치를 하게 될 ‘센터’의 예산 확보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자면, 중앙정부의 법률(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각 시군에 설치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으로 판단됨.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충남도의 자치법류인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한편, 시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정책대상과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임.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정책대상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임. 또한 기관 운영주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장애특성상 장애인가족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

이 되는 기관 혹은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도비를 투입하여 시군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책무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인 과제로,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주요 시군에라도 우선 설치하여 ‘장애인가족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형제가 겪는 어려움은 다른 장애유형의 가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파악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기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장애인가족을 위한 서비스 연구 및 개발, 운영 등을 하고 있는 현재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특화시킬 필요성이 높음. 동시에 발달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로비와 단체행동을 통해 충청남도로부터 예산확보노력이 필요함. 더불어 장기적으로 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립 및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요구됨.

8.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집단 및 동료 상담가 양성 프로젝트

발달장애인가족 자조집단 및 동료상담가를 양성이 필요함. 이러한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양적 조사결과, 자녀를 돌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 ‘다른 발달장애인의 부모’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서적 공감대를 함께 하는 자조집단의 중요성, 동료상담가의 역할이 도출됨.

발달장애인 부모모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심리적 부담 감소, 새로운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서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임. 또한 발달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에게 전문적인 능력을 부여하여 인력을 훈련 및 양성하는 것임. 이는 적은 예산으로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됨. 본 연구의 조사결과, 발달장애인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다른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상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따라서 상담 및 지지의 역할을 하는 동료상담가 양성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할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별로 동료상담가의 역할이 다르므로 간략히 요약함. 영유아기에는 치료, 진단, 특수교육 등과 같은 정보제공, 장애수용이 있을 것임. 학령전기인 아동기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임. 예컨대,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좋은 특수교사와 만나는 법, 잘 지내는법(관계유지), 분리와 통합교육의 갈등해법 등이 발달장애인부모들에게 필요할 것임. 학령후기인 청소년기에는 자립준비, 직업교육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성인기에는 평생교육, 활동보조, 주간보호서비스, 장애인고용 작업장 등에 관한 정보가 요구될 것임. 더불어 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양육기술도 차이가 있을 것임. 또한 자기결정권이 없는 사람에게 법률적 행위를 대리 지원하는 성년후견제가 부모가 늙었을 경우 필요함. 이에 대한 제도도 자녀가 성인기일 경우, 미리 인지할 필요성이 높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생애주기별로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동료상담가가 교육, 상담, 지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9. 영유아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

첫째,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차별 금지 교육이 필요함. 조사결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어려운 점에서 1순위는 ‘일반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28.8%, ‘일반아동 부모님의 이해부족, 편견’ 15.8%(의 순으로 조사됨).

둘째, 영·유아기의 양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함. 조사결과, 영·유아의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후 가장 필요

한 것의 1순위는 ‘장애 유아 보육비 및 교육기관 수의 확충’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발달장애인 만3세 이상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곳’에 대한 조사결과, 일반 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유치원, 유아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조기교실 등 어느 곳에도 “다니지 않음”에 7.6%가 응답하였음. 충남 발달장애 영유아 중 7.6%는 방치되고 있다는 실태로 나타남. 따라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파견학급, 순회교육 등의 방안마련이 요구됨.

10. 중증장애아동 전문병원 확대(치과, 소아과 등)와 치료비·이동 지원

충남의 경우, 장애발견 초기 지역 내 조기개입(집중)치료시설, 치료시설이 부재하므로 지원체계구축이 필요함. 발달장애인 진단을 하는 병원만큼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실제적으로 적으며, 충남지역의 경우, 거의 없는 실정임. 장애아동 전문병원 조사결과, 장애아동의 건강유지 및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악한 결과, 1순위는 ‘장애아동 전문병원 확대(치과, 소아과 등)’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23.6%(87명)로 파악됨. 2순위는 ‘의료진의 발달장애(지적, 자폐, 뇌병변)에 대한 이해 확대’ 21.5%, ‘수술비·치료비 지원’ 19.3%로 나타남. 또한 질적 조사 결과, 경제적 부담이 크고 조기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유아기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비용지원 욕구가 나타남.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치과, 내과가 필요하다는 정책욕구가 파악됨. 따라서 중증 장애아동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원이나 거점(전문)병원 지정방안 검토가 필요함. 또한 병원, 보건소 등 소아 낮 병동 운영도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병원을 설치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학제적인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소아정신과와 재

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연구(최복천외, 2014: 211)결과가 있음.

더불어 장기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발생 초기의 입원치료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크며, 타 지역으로 입원치료를 하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충남지역에 중증장애아동 치료시설이 거의 없어 외래진료를 위하여 타 지역 이동해야 하는데, 장애인콜택시의 양적인 부족과 타지역 이동의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중증장애아동 치료를 위해 이동에 대하여 타 지자체나 병원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함.

11. 발달장애 자녀의 장애진단의 체계화 및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

장애발견 및 진단 이후 통합적으로 안내할 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높음. 발달장애가족 대상으로 양적 조사결과, 발달장애 자녀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1순위는 ‘자녀교육 및 치료문제’ 22.3%(83명)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비용 1순위는 ‘의료비(언어, 물리, 작업치료 등)’ 47.9%(171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재활치료가 장애아동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악한 결과, 1순위는 ‘지역사회 내 재활치료 제공기관 확대’ 30.7%로 가장 높게 파악됨.

또한 질적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진단 후 조기개입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언어치료, 재활치료, 치료지원 등)을 통하여 진단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리고 지적장애의 경우, 장애 등록 하지 않아도 서비스 필요하면 지원 가능해야 함이 도출됨.

12.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도차원에서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필요함. 주간보호서비스, 학교 방과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활동지원제도, 양육지원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하여 첫째, 돌봄 서비스 기관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 교실, 병원 등에 특수교사 파견이 필요함. 아동특성, 교육특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수교사를 순회 파견해야 함. 조사결과, 응답자의 98.8%(245명)가 특수교사가 파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둘째, 아동기 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방과 후 돌봄 지원(방학 돌봄 지원 포함)’ 이 확대가 필요함. 조사결과, 방과 후 돌봄 지원(방학 중 돌봄지원 포함)응답자의 98.8%(247명)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

13.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영유아기, 아동기 사회서비스(심리, 정서 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 아동기 사회서비스는 평생 한번 이용가능 함.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이용기간이 지나면 비용부담을 느끼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전문가 조사결과가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해서만 사회서비스를 받으려는 부모가 있으므로 비형제자매 등도 받을 필요성이 높다는 부모인식이 필요함. 더불어 심리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교육도 필요함. 따라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경우, 민간과 단가의 차이로 바우처 기관을 기피하기도 하며, 이는 낮은 수준의 제공인력을 채용하게 되고, 서비스의 질적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짐. 따라서 민간수준과 비슷하게 서비스 제공인력의 단가조정이 필요함. 양적조사결과, 복지지원 및 서비스 지원정책 영역의 필요정도를 알아본 결과 ‘사회서비스 치료(언어)’는 영유아기, ‘사회서비스 치료(심리·정서지원)’는 아동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은 아동기에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또한 질적 조사 결과, 발달장애 부모에 대한 서비스(심리지원서비스)도 도출되었음.

한편, 충남은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 수요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서비스 수요는 있는데, 공급기관인 센터가 제공인력의 이동수단의 어려움 등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촌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당일 약속취소 등을 하면 제공인력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도 요구됨.

14. 발달장애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양육지원서비스

첫째, 장애에 대한 가족의 빠른 수용과 진단 후 관련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 또한 장애진단 후 대응방안, 심리적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양적조사결과, 장애를 처음 의심하고 진단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년 6개월(30

개월)로 파악되었음. 또한 아동의 장애 진단 후 필요한 재활치료나 조기교육을 시기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1.5%(152명)로 높았음.

둘째, 아동기 장애아동의 돌봄 부담이 매우 크므로 장애아양육가족지원을 위하여 가족휴식, 돌보미 파견 등도 확대해야 함. 양적조사결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정책 영역의 필요정도를 알아본 결과 '정보제공과 교육'은 아동기점, '양육지원'은 아동기, '재정지원'은 영유아기에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질적조사 결과,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서비스 지원, 돌봄 부담 완화 서비스 (숨쉴 수 있는 시간 필요) 등의 정책욕구가 나타남.

15. 발달장애청소년의 정신 건강검진 기회 확대

청소년기동안 발달장애학생들은 우울, 분노, 무기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전문가 인터뷰에서 “우울증 심함. 신체적(척추 측만) 건강 악화”의 특성이 있었고,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건강교육을 실시해본 결과, 학교에서 발견하지 못한 자세, 식습관, 근육량, 운동방법 등을 처방 받은 후에 변화가 나타남. 또한 건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실천하는 모습이 발견됨”. 또한 청소년기에는 심리치료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지원, 성범죄 방지 안전망 교육 필요 (휴대폰 텔레마케터), 인터넷 게임중독방지를 위한 특별 서비스가 필요함이 도출됨. 따라서 자기표현이 서툰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수시로 실시할 필요성이 높음. 이를 통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이 스스

로 돌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전문가의 처방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더불어 발달장애 청소년에 대한 2, 3차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16. 진로 및 성인기 전환 교육 확대

청소년기에는 당사자 중심 서비스 중요함. 복지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고민되므로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개별특성화 맞는 진로직업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주말, 방학, 학기 중, 졸업이후 등 적절한 시기에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특성화 특수학급 운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발달장애인은 시장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차원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하여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양적조사결과, 교육전반에 향후 가장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 중 1순위는 ‘진로 및 직업교육 확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를 개방형 질문으로 파악한 결과, ‘교육차원의 진로교육 및 기관 안내(28명)’가 가장 많이 나타남. 또한 질적 조사에서도 성인기 전환교육, 직업체험 등(학교기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리고 “발달장애를 지닌 학생들도 진로 직업의 중요성을 안다. 교사의 오랜 경험을 통해 학생은 생애 전망이 있을 때 더 잘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학교 희망일자리 뿐만 아니라

복지 일자리도 중증의 발달장애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졸업 후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훈련으로 점심값을 받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미래일 수 밖에 없다” 는 인터뷰 결과로부터 발달장애 청소년이 졸업 후 학교 밖으로 나가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도차원에서 교육, 복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발달 장애인인턴쉽(일반직장), 직업체험 등의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음.

17. 비장애형제·자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

비장애형제자매는 부모의 관심부족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학습부진, 불안,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사결과가 있음. 따라서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바우처 형태로 비장애형제자매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이를 통하여 장애수용력, 가족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양적 조사결과, 발달장애인 자녀로 인해 비장애형제·자매가 겪는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1.64점으로 ‘매우 많음’ 으로 나타났음. 또한 61.3%가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장애아동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28.1%(9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질적조사에서도 비형제자매(스트레스, 출산기피 등)를 위한 서비스 중요한데 발달장애인 가족은 발달장애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18. 시·군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공적 돌봄 시스템) 마련

발달장애청소년들도 행복하게 여가를 보낼 권리가 있으므로 안전한 공간이 필요함. 각 시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처럼 발달장애청소년센터가 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발달장애청소년과 가족이 방과 후, 주말, 방학동안 여가, 교육,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임. 본 연구에서 전문가 인터뷰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은 가족만의 책임으로는 어려운 현실을 많이 보아왔고 발달장애인의 청소년기는 비장애인과 같이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가족이 통제력을 잃는 경우를 보아왔다”, “학습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은 주로 게임이나 SNS를 하는 시간으로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 방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성추행, 성폭력, 학교폭력, 친구 간 갈등, 게임중독의 문제에 노출되어 범죄 피해자나 가해자로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결과로부터 공적 돌봄 시스템이 매우 필요함이 도출됨.

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고용과 연계된 평생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비장애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임. 반면에 일본은 학위과정이 아닌 성인기 평생교육으로 오픈칼리지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 사회성 훈련 등을 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이후 주로 집, 주간보호센터, 생활시설에 거주하는데 평생교육이 매우 필요함.

본 연구의 양적조사결과, 성인발달 장애인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의 1순위를 살펴본 결과, ‘장애자녀 평생교육’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교육적 지원은 경제적 교육지원’ 31.2%, ‘직업체험 교육지원’ 28.4%, ‘지역사회 참여 교육지원’ 25.7%에 대한 욕구가 파악되었음. 그리고 성인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를 개방형 질문으로 파악한 결과, ‘직업교육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문화·여가 및 생애주기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또한 질적조사에서도 평생교육시설 및 서비스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 및 훈련교육시설), 자기주장 훈련, 독립생활지원(발달장애인 감수성가진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이 중요함. 평생교육내용에 자립생활, 문화 예술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20.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중간과정 지원

발달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독립생활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충남에 독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함.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을 설치하여 독립생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본 연구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 부모 인터뷰 결과, 독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부족 등에 대한 정책욕구가 파악되었음. 따라서 독립생활 중간과정을 지원하는 정책방안 중 하나로 발달장애

인을 위한 체험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체험홈 기간을 거친 후 부모와 독립하여 그룹홈에서도 생활이 가능할 것임. 더불어 발달장애인은 처음 취업하여 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함. 따라서 취업적응기간에 헬퍼(상담, 치료, 코칭)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1.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장애인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운영하는 보호·거주시설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임. 성인장애인부모들의 커다란 고민은 평생교육, 고용 등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인기에는 거의 직업이 없으며 집이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장애인의 보호 혹은 거주가 장애인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임. 인터뷰 결과, “시설은 믿음이 덜 가고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남기기엔 그 짐이 너무 크기에 공동체나 조합 식으로 살 방법을 생각 중임(가족 사)” 이라는 결과로부터 얼마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거정책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음.

II. 장애인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장애인 관련 인식개선사업을 단체별 통합하여 운영

현 충청남도에 기반을 둔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파악하면 2개 단체 이상 중복가입 된 회원이 다수임. 따라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인식개선사업 공모 시, 2개 또는 3개 단체가 연합으로 사업 공모를 하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임

☐ 장점

- 단체별 사업의 중복성 방지
- 참여자 모집용이
- 사업프로그램의 내실성
- 사업 예산의 현실성
- 단체별 네트워크 형성

☐ 단점

- 초기 사업실행 시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특수성으로 인한 통합 운영의 문제

☐ 사업 시행의 예

- 2016. 7. 충남곰두리봉사회와 충남척수장애인협회가 공동주최한 하계자립캠프

[첨부 1]



기부금 운영 자료

기 부 금 신 청 서(제8조 관련)

신청자 (단체.시설)	단체(시설)명	(사)충남척수장애인협회		대 표 자	정병기	
	설립년월일	2006년 4월 11일		홈페이지	www.cnschia.org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12-82- * * * * *				
	주 소	(311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6길 1-4 시떼베르 203호				
	주요 사업	· 척수장애인재활훈련 지원사업 · 정보메신저파견사업 · 장애인동료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 찾아가는 재가장애인 물리치료사 파견 사업				
연락처	담당자	성 명	이 유 정	부서명	사업팀	
		직위.직책	사원			
		연락처 이메일	전 화 : 핸드 폰 : 팩 스 : 이 메 일 :			
	대표자	전 화 : 010- * * * * - * * * * 이 메 일 :				
	신청개요	사 업 명	척수장애인 하계 자립캠프			
사업 개요		· 행사기간 : 2016년 07월 22일 ~ 7월 24일 / 2박3일간 · 행사장소 : 만리포해수욕장 · 참여인원 : 80여명(척수장애인 50명, 봉사자30명) · 주최/주관 : (사)충남척수장애인협회, 충남곰두리봉사회 · 홍보방법 :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홍보 협회회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지역신문 및 언론매체 보도자료 발송 등				
예 산		○총 사 업 비 : 6,000 천원 ○마사회 신청금액 : 5,000 천원 (80 %) ○자부담 및 기타 : 1,000 천원 (20 %)				

위와 같이 한국마사회 공익성기부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6월 8일

단체(시설)대표자 : 충남척수장애인협회장(직인)

1. 단체개요

- 단 체 성 격 : 1. 사회복지
- 대 표 자 명 : 정 병 기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6길 1-4 시떼베르 203호
- 설 립 년 도 : 2006년
- 설립허가처 : 보건복지부
- 설 립 목 적 :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으로써, 척수장애인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2. 주요사업실적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사업
-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인 전국척수장애인축제대회 어울림한마당
- 충청남도 지원사업 척수장애인 침대매트리스 세척사업

3.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7월 22일 ~ 24일 / 2박3일간
- 장 소 : 충남 태안군일원(만리포해수욕장)
- 사업목적 : 척수장애인과 곰두리봉사회 연합 수련회를 개최 하여 기관의 협력을 도모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심 강화를 위한 하계 수련을 제공함으로 동료간의 정보 교류 및 사회성증진을 통해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교육프로그램

- 척수장애인자립토론회
- 장애학습
- 장애관련 도전골든벨
- 교류프로그램
 - 레크레이션활동(아이스브레이크 레크레이션)
 - 스포츠활동(다트, 보치아)

○ 총사업비 : 금6,000,000원(금육백만원정)

4. 지원요청금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정)

5. 과거지원받은실적 : 없음

Ⅲ. 독립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중 시각장애인복지관 성인 일상생활훈련 중심으로

□ 사업 추진 배경¹⁾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천안에 위치해 있어 천안 근교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 이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2014년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1,053명의 이용자 중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천안(199명, 18.9%), 아산(104명, 9.9%), 홍성(123명, 11.7%) 등 세 지역이 전체 4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 거주 시각장애인의 복지관 이용률은 각각 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충청남도를 구성하는 15개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노령화와 중복화로 대표되는 시각장애인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야기된 욕구의 다양화라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각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광역화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복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 실천하기 위해 2015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서비스 광역화 추진에 필요한 목표와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작업을 수행하였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연구는 충청남도 각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1만 2천여 시각장애인들의 서비스 욕구를 어떤 전달

1) 제4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복지포럼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연구보고회 자료(2016)

체계를 통해 해소할 것인가에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와 누구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여 그 필요성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조사를 토대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이 충청남도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위해 몇 가지 쟁점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충청남도 내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지역연계교육 실시

- ① 각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교육(시각장애이해 및 유형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 ② 시각장애 영역 기초재활 전문가 파견교육(정보화 교육, 보행교육)
- ③ 정보화강사 양성과정 지원, 보행지도사 양성과정 지원

둘째, 전문적인 기초재활훈련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집체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원거리지역 중도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 교육을 위한 기숙시설(공동생활가정, 자립체험홈) 운영

- ① 점자, 보행, 정보화 이수과정 운영
- ②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교육 실시
- ③ 일상생활훈련을 위한 실제 훈련환경 조성

셋째, 충청남도 북부에 위치한 복지관 이용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조직화를 위한 분관 설치

- ① 재가복지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최소화
- ② 효율적인 사례관리 체계 형성
- ③ 충청남도 남부권 이용자를 위한 지역사회조직화(CBR)

□ 문제점

사업추진배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가지 쟁점 중 두 번째 쟁점인 기초재활훈련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점자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생활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위해서 참여하는 이용자의 경우 지리적 상황으로 인하여 복지관으로 출퇴근 하며 훈련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관 이용자에게 기숙시설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운영 현황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생활관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없는 상황임. 최근 까지 운영된 기관은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인보생활관을 2016년 8월까지 운영하였다.

인보생활관을 폐지한 이유로는 ① 이용자의 감소, ② 관리인원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생활관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숙시설은 ① 공동생활가정, ② 단기보호시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복지관 본관과 별도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복지관과 동일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해결대안

○ 1안 : 복지관 내부 기숙시설 마련

- 장점 :

-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의 최소
- 이용자 감소 및 운영기간 축소 등에 대응력이 빠름

- 단점 :

- 이용시설에서 기숙사 마련의 어려움(공간, 행정기관의 이해)
- 야간 및 주말 관리에 어려움 발생

○ 2안 : 복지관 외부 프로그램 진행 및 기숙시설 마련

- 장점 :

-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의 절감
- 이용자 감소 및 운영기간 축소 등에 대응력이 빠름
- 지역사회와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 이용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성 증진

- 단점 :

- 이용자 자율적 관리가 필요
- 야간 및 주말 관리에 어려움 발생

○ 3안 : 복지관 부설 단기보호시설 설립

- 장점 :

- 많은 이용자 이용 가능
- 야간 및 주말에 직원을 배치함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가능

- 단점 :

-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의 발생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 별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사항
- 개인공간 확보 문제 발생
- 이용자 감소 및 프로그램 운영 휴식기간 발생에 따른 문제 대처 미흡

○ 4안 : 복지관 부설 공동생활가정 설립

- 장점 :

- 야간 및 주말에 직원을 배치함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 가능

- 단점 :

- 초기투자비 및 운영비의 발생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
- 별도 사회복지시설 설치 사항
- 이용자 감소 및 프로그램 운영 휴식기간 발생에 따른 문제 대처 미흡

□ 결론 및 제언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광역화 서비스를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리적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중도시각장애인의 기초재활훈련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숙박시설 및 프로그램 공간이 필요함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제2안의 경우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 판단되어진다.

제1안의 경우 시설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 즉 이용시설에서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제3안 및 제4안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제2안인 지역사회내의 주거시설(아파트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IV. 장애인이동서비스 제도 개선

☐ 장애인이동서비스 제도 개선

현 충청남도에 장애인이동서비스 운영 형태의 경우 시·군 간 이동에 제한적인 형태임 따라서 시·군간의 경계를 넘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야 해야 하며, 통합 콜센터를 설치 하여 도 내 모든 교통약자가 편히 지원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

☐ 장점

- 충남 전 지역의 이동 가능
-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 차량 관리 용의
- 사업 예산의 현실성

☐ 단점

- 많은 차량을 확보한 시군의 경우 차량 운영비 증가의 원인이 됨
- 기존 운영 단체의 민원이 예상됨

☐ 시행의 예

- 다수의 광역도에서 시·군간의 경계를 넘어 교통약자 지원을 함
- 경남의 경우 유료도로 통행 지원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지원이 될수 있도록 유도

[첨부 1]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9.] [경상남도조례 제4069호, 2015.10.29., 일부개정]

경상남도(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9.>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콜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 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라 시·군의 전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자문)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에 대하여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4.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저상버스 도입 및 계획)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내 및 농어촌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보도 및 도로 정비

3. 교통약자의 시외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에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저상버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경우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체에 가산점 부여 및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1년 동안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콜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콜센터는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③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콜센터의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콜센터 및 콜 단말기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전반
2. 특별교통수단과 이용승객과의 연결 및 민원처리
3. 콜센터 운영 관련 시·군 간의 정보 협력 및 지원
4. 콜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5. 그 밖에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특별교통수단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요금 및 보유차량 대수
2. 콜센터 종사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편람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콜센터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

제15조(도입·운영 지원)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운수종사자는 성실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해 및 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이행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2]

「2016년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계획



경 상 남 도
[교통정책과]

2016년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계획

- ❖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

■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16. 1. 1. ~ 11. 30.
- 사업비 : 70백만원(도비)
 - 부담비율 : 도 70%, 시·군 30%
 - ※예산초과 금액분은 시·군비로 집행
- 지원대상 :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중 유료도로 이용 차량
 -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2015. 12월말) : 315대
- 지원방침
 -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통행료 지원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용자가 탑승 시 지원
 - 이용자 부담분 지원(차량 내 운전자만 탑승 시 미지원)
 - 시·군별 교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방법
 - 시·군에서 유료도로통행료 선지원 후 교부신청에 의거 지원
 -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상세내역 첨부
 -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됨에 따른 지원기간 변경
 - : 2016. 1월~ 11월분 지원(상·하반기, 2회)

추진일정

- 특별교통수단 통행료 지원계획 통보(도→시·군) : 2016. 4월
- 지원액 교부신청 및 교부(시·군 ↔ 도) : 상·하반기(7월, 11월)
- 도비 보조금 실적(정산) 보고(시·군→도) : 집행 완료 시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통행료 지원내역 보고 시 증빙자료(운행일지, 영수증 등) 대조 확인 철저
- 도비 보조금 교부액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협조 및 보조금 초과액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지원

붙임 2015년도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보조금 교부내역(참고용)

2015년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대, 원)

구 분	운행대수 (2014.12.)	도비 지원 (50%)	통행료 내역		비 고 (시행일)
			시군신청(50%)	통행료(100%)	
계	315	50,000,000	50,000,000	111,746,810	
창원시	100	15,941,450	15,941,450	34,040,000	2013. 1. 9
진주시	22	3,107,000	3,107,000	7,051,050	2013. 4. 1
통영시	20	1,664,000	1,664,000	3,500,000	2013. 1. 1
사천시	9	721,000	721,000	1,560,000	2013. 1. 1
김해시	50	10,940,000	10,940,000	25,477,100	2013. 1. 1
밀양시	20	4,374,000	4,374,000	9,646,900	2013. 1. 1
거제시	26	3,848,000	3,848,000	8,417,930	2010. 3.16
양산시	20	5,128,000	5,128,000	12,202,000	2009. 4.17
의령군	4	1,089,000	1,089,000	2,439,820	2013. 3. 1
함안군	6	800,000	800,000	1,700,230	2013. 2.15
창녕군	5	391,000	391,000	814,440	2013. 4. 1
고성군	5	330,000	330,000	820,000	2013. 1. 1
남해군	7	663,000	663,000	1,587,220	2014. 1. 1
하동군	5	654,000	654,000	1,669,120	2013. 1. 1
산청군	4	144,000	144,000	328,460	2013. 3.22
함양군	4	96,000	96,000	232,200	2013. 6.18
거창군	3	38,550	38,550	77,100	-
합천군	5	71,000	71,000	183,240	-

V. 장애인의 사회복귀 현장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충남척수장애인협회

「충남척수장애인협회 재향세미나」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2016년 11월 11일

발제자 : 박 중 군

목 차

- I. 서론
- II. 척수장애인의 이해
- III. 척수장애인과 고등교육
- IV.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경험 연구
- V. 결론

I. 서론

- 척수장애인은 3중장애로 인해 사회복귀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음
- 척수장애의 경우 사회복귀까지 외국은 3~6개월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2~3년의 병원생활을 하고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의 고등교육은 단지 교육기회 제공 차원을 넘어서 평등과 권리보장운동의 의미까지도 포함됨(2009. 조재훈)
-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는 사회적 신분 상승과 취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냄(2014. 윤상은 외)
- 약 8000명이 이상의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지만 척수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 이동권,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함
-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12월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발표

II. 척수장애의 이해

척수장애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 우리나라는 척수장애인 통계가 없음, 15개의 장애유형에 지체장애로 분류되어 있어 척수장애인의 통계가 없음, 유형분리와 통계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한 추정, 미국의 인구대비 척수장애인의 비율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약 6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로 추정
- 2015년 척수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남성 80.9%, 여성 19.1%로 나타남
- 조사대상 척수장애인의 경수손상이 41.8% 홀수 이하가 58.2% 있음
- 손상원인으로 외상이 89.4%, 질병이 9.8%이며 외상에서 교통사고(53.6), 낙상(22.3), 스포츠(5.7), 폭행(0.8) 등의 순이었음
- 입원병원 수는 평균 3.16 곳이었으며, 입원기간은 평균 29.98 개월이었음
- 학력은 대학재학이상이 38.6%,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42.4%, 83% 고졸이상

II. 척수장애의 이해

3중 장애 : ① 중도장애

- ✓ 중도장애란 표현은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법에서의 표현이 다름. 장애인복지법은 중도(中道)장애, 특수교육법에서는 중도(重度)장애라 함
- ✓ 중도장애란 어느 시기까지는 비장애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사고나 난치병 등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말함
- ✓ 대표적인 중도장애는 절단, 척수, 외상성 뇌출혈, 뇌졸중 등이 있음
- ✓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발생시기가 20세 이후가 전체의 82.8%임(201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의 구분(장애발생시기별)		
발생 시기	구분	
출산이전	선천장애	
출산이후	후천장애	이력성 장애
		무이력성 장애

II. 척수장애의 이해

3중 장애 : ② 중증장애

- ✓ 중증(重贈)장애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됨
 -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제2급 이상의 장애를 말함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3) 국가유공자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2급 이상의 장애인과 3급의 장애인 중에서 상지의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간질)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중증장애라고 할 수 있음
- ✓ 척수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1급의 경우 92.1%이며, 2급의 경우 5.7%, 3급 이하의 경우가 2.2%이므로 대부분 중증장애인임(2015 척수장애인실태조사)

II. 척수장애의 이해

3중 장애 : ③ 중복장애

- ✓ 척수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개의 장애유형 중에 지체장애의 하위유형임
- ✓ 척수장애의 경우 배변, 배뇨의 문제로 장루·요루 장애에 해당됨
- ✓ 경수상위 손상의 경우 자가호흡이 곤란한 경우에 호흡기 장애에 해당됨
- ✓ 척수장애의 경우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성기능장애가 동반됨
- ✓ 2015 척수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53.2%의 척수장애인이 통증에 시달림
- ✓ 또한 관절구축 등으로 관절장애, 이소성 골화증, 자율신경과반사증혈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곤란을 경험함
- ✓ 척수장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있으나, 장루·요루 장애, 호흡기장애인 성기능장애, 통증 등의 추가 장애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중복장애인임

II. 척수장애의 이해

척수장애 합병증

척수장애인의 주요 합병증	
구분	손상정도
호흡기계	제한성 폐기능 장애, 호흡부전, 폐렴
심혈관계	기립성 저혈압, 서맥, 심부정맥 혈전증
자율신경계	자율신경 이상항진증
위장관계	신경인성 장, 장폐색증, 소화부전, 담석, 변비 및 설사
비뇨생식계	신경인성 방광, 비뇨기 감염, 요석, 성기능장애, 발기부전
피부	욕창
통증	신경인성 통증, 근골격계통증
경직	경직
근골격계	관절구축, 골절, 이소성골화증, 과사용 증후군
척수손상부위	척수공동증

(출처: 대한외보감정학회(2010). 외보감정학: 장애평가와 외무기능감정. 중앙문화사)

II. 척수장애의 이해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척수장애의 발생과 사회복귀



III.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척수장애의 고등교육의 의미

1. 척수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음.
직업을 가지고도 배변, 배뇨, 통증, 욕창 등으로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겪음
2. 학력이 높을 수록, 직업이 전문직일 수록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증가함
미국척수연구(NSCISC)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 수록 직업을 가질 기회는 증가
3. 척수장애인의 경우 타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43.4%이고, 대학이상이 15.3%인 것에 반해서 척수장애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83%, 대학이상이 38.6% 였음.
3. 상대적인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장애로 원직장이나 원직무 복귀가 어려움. 따라서 장애이전의 전공이 아닌 장애 이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공으로 진학을 함.
4. 중증, 중복장애에 적합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학력이 요구되는 사회임

III.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고등교육과 적응

척수장애인의 적응		
구분	기능	적응내용
신체적 적응	잔존기능의 확대	- 손상 후 초기 치료과정에서 잔존기능을 확대하는 수술 -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통해 잔존기능 최대한 확대
	잔존기능의 유지	- 일상생활 중에 잔존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 - 스포츠 활동, 기타 적극적인 여가활동
	잔존기능의 활용	- 감정관리, 남아 있는 잔존기능 활용 - 근육강화를 통한 일상생활확대, 자기통제확대
심리적 적응	장애학습	자기통제와 자기관리를 위해 본인의 장애학습
	장애수용	가치를 절하지 않는 긍정적 수용
	장애정체성확립	-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관 확립 - 미래에 대한 희망, 동기부여
환경적 적응	가족적응	가족의 장애에 대한 수용과 적응
	생활환경적응	주택개조 등을 통한 환경개선을 통한 적응
	직장환경적응	직장의 환경개조, 동료인식개선 등을 통한 환경적응
	역량강화	권한의 회복, 잃은 역량만을 새로운 역량강화

(출처: 박종문(2013). 척수장애인의 적응과 사회복귀.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척수장애인협회)

III.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고등교육 경험과 동기부여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평가	
정보원천	설명
1. 실제수행 (actual performance)	자기 성공경험을 말함 작은 성공경험이 쌓이면 동기부여가 됨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성공 가능한 목표설정 필요
2. 대리경험 (vicarious experience)	타인의 성공경험에 자신감을 가지게 됨 동료의 성공경험이 동기부여가 됨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동료의 성공경험
3. 언어적 설득 (verbal persuasion)	제3자의 설득, 산재의 경우 재활상담사의 설득 어려운 과제일수록 설득이 어려움 지속적인 지지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됨
4. 생리적 단서 (physiological cues)	선천적으로 타고난 긍정성 불안은 낮은 동기부여를 가지게 함 유쾌한 기분은 높은 동기부여를 발생토록 함

(출처: 염신자(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간과복지)

Ⅲ. 특수장애인과 고등교육

장애인고등교육 관련 법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4조 차별금지,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 편의제공,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정의, 제4조 차별행위,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등.
3. 고등교육법 :
제33조 입학자격,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등.
4. 장애인복지법 :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제7조 대상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

Ⅲ. 특수장애인의 고등교육

장애대학생 재학연왕

(단위 : 교, 명)

구분		학교수	인원수			비율 (%)	비고
			남	여	계		
대학 (대학원)	대학교	436	2,710	1,344	4,054	49.0	
	산업대학	10	7	4	11	0.1	
	교육대학	20	97	70	167	2.0	
	방송통신대학	2	374	319	693	8.4	
	사이버대학	34	1,042	556	1,598	19.3	
	기술대학	2	0	0	0	0.0	
	각종대학	4	12	5	17	0.2	
전문대학		169	1,024	684	1,708	20.7	종리학 포함
대학원대학		43	21	2	23	0.3	
합계		720	5,287	2,984	8,271	100	

(출처 : 대학알리미(2014. 4. 1. 기준))

III. 특수장애인의 고등교육

장애인특별전형 현황

(단위 : 교, 명)

학년도	전 문 대 학		대 학		합 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	79	71	439	80	518
2008	8	100	74	460	82	560
2009	10	74	80	498	90	561
2010	19	51	80	601	99	652
2011	14	60	89	574	103	634
2012	16	97	90	566	106	663
2013	25	185	97	649	122	834
2014	23	84	98	637	121	721

(출처 :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지원 영역	지원 부문
1. 입학지원 및 장애학생 발굴	1) 입학 지원 2) 대학별 발굴
2. 교수·학습지원	1) 일반교과 지원 2) 교재·교안 지원 3) 교재·교안 개발 지원 4) 교재·교안 개발 지원 5) 교재·교안 개발 지원 6) 교재·교안 개발 지원 7) 교재·교안 개발 지원 8) 교재·교안 개발 지원
3. 교수·학습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1) 교수·학습기자재 지원
4. 도구·기 지원	1) 교재·교안 지원 2) 교재·교안 지원 3) 교재·교안 지원 4) 교재·교안 지원
5. 생활지원	1) 생활 지원 2) 생활 지원 3) 생활 지원 4) 생활 지원 5) 생활 지원 6) 생활 지원 7) 생활 지원 8) 생활 지원
6. 진로 및 취업 지원	1) 진로 지원 2) 진로 지원
7. 교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안내	1) 교내 편의시설 지원 2) 교내 편의시설 지원
8. 정보통신 지원	1) 정보통신 지원
9. 장애이해 교육	1) 장애이해 교육 2) 장애이해 교육
10. 대학입학 지원 업무	1) 대학입학 지원 업무 2) 대학입학 지원 업무 3) 대학입학 지원 업무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 (출처 : 2012 대학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III.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우수사례(교육부 2015)

영역	우수사례	비고
선발	미(갈라디) 장애학생 면접 시 장애유형중 파악하고 수험등록이나 이종등록미 등 필요 여부를 사전조사 후 적절한 인정 배치 미(나사렛대) 입시교과 수험준비상 제작(장애학생) 및 엑스파일 홈페이지 탑재·제공(시각장애학생) 미(부산대) 입학 전형에 응시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선발과정을 이력 최소화	
교수·학습	미(단국대)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학생의 장애조건에 관한 정보 및 가이드를 사전 제공 미(서강대) 수업담당 교수가 강의 수업계획서에 장애학생 지원사항 입력 및 정기적으로 장애학생과 중점 간담회 운영 미(숙명여대) 장애학생을 위해 수업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보여주는 '속기록 강의실' 설치·운영	
생활편의	미(성균관대) 도서관 건물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전용열람실을 마련하여 쾌적한 학습공간과 신속한 생활편의 지원 미(동국대) 매년 장애학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 지원 내용 등 장애학생 및 학부교에게 전달 미(대구사이버대) 대학 주요 홈페이지의 모든 그림과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고, 동영상·오디오에 자막 제공	
취업·진로	미(대구대) 장애학생 취업 지원에 장애대학생 취업캠프 참여프로그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매년 운영 미(이화여대) 장애학생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중 장애유형과 전공에 따라 맞춤형 취업교육 시행 미(한국생서대) 대학생 직업역량진단평가(K-CESA) 실시를 통해 장애학생의 역량증진을 위한 진단, 맞춤형 지원	
시설·설비	미(충청대) 교내 모든 구역에 점자분류 설치, 건물 용접구 높이차이 제거 등 장애학생 이용에 용이한 편의시설 전면 개선 미(우석대) 장애학생 이용을 포함한 건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내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미(장로회신학대) 교내 모든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 장애학생 기숙사 및 휴게실 설치·운영	
인식개선	미(경희대) 시각장애의 불편을 체험하고 장애인들 중대하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동화인도 레스토랑' 프로그램 운영 미(서원대) 점자 배우기, 점자어음 이용한 건물 접근성 파악하기, 보조공학기기 학하기 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미(동남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활사업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전문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IV.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경험연구

연구개요

- 대학교 재학 중인 척수장애인 4명, 대학원 재학중인 척수장애인 4명,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을 한 척수장애인 6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함
 - 집단심층면접(FGI) 3회, 개별심층면접(IDI) 1회를 하였고 개인별 전화통화를 통해서 보충자료수집을 하였음. FGI와 IDI는 2시간 내외, 개별전화통화는 1시간 내외 소요되었음. 면접내용을 연구참여자 동의 후에 녹음하였고 이후 전사하여 연구함
 - 경수손상 6명, 흉수손상 8명이었음. 여성 5명, 남성 9명. 20대 3명, 30대 5명 40대 3명, 50대 3명. 졸업생 중에 대학교는 2명, 대학원은 4명이었음
 - 심층면접에서의 질문은 장애과정, 장애 이후 병원생활, 진학동기, 진학 시기대한 점, 학업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기대와 차이, 고등교육의 의미 제안할 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진행하였음
- ❖ 이 연구는 학술지 투고논문을 요약함.

IV.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경험연구

연구결과

- 장애 이후 진학까지 :
연구참여자들 중에 2명은 병원 퇴원 이후 바로 진학을 하였고, 병원퇴원 후 특별한 일 없이 생활하다가 진학을 한 경우가 4명이었으며, 자영업, 직장생활 등을 경험 한 경우가 8명이었음
- 대학교를 진학 한 경우는 7명이었으며,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한 경우는 7명이었음. 장애 이후 대학교진학 후에 다시 대학원을 진학 한 경우는 4명이었음
- 진학동기는 '자신을 찾기 위해',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대학졸업장 때문에', '자격증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 라고 진술함. 또한 진학 할 때, '누군가의 추천', '자신이 직접 정보를 검색함' 등
- 졸업후의 기대는 '자신의 길을 찾는 것', '전문지식이 생기는 것', '졸업장을 받는 것', '자격증을 받는 것',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 으로 기대하고 있거나 기대를 했었음

IV.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경험연구

연구결과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에서 어려움	
분류	내용
신체적인 면	재활이 덜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신체적으로 힘듦, 통증, 배변·배뇨 오래 앉아 있는 것, 다리부종.
심리적인 면	배변·배뇨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편의시설 때문), 동일전공 진학이 아니어서 위축됨,
접근성	학교, 도서관, 강당 등의 편의시설, 회식장소의 편의시설, MT장소의 편의시설
경제적인 면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학자금 대출, 수입이 없는 상태
인간관계	MT, 회식 등의 불참, 학생회 원우회 활동, 비장애학생들과 어울림 나이차이의 문제, 편의시설 등으로 인한 폭 넓은 인간관계를 못함
장애인식	동료학우들의 장애인식부족, 교수의 장애인식부족, 직원들의 장애인식부족 배려부족, 이야기해도 들지 않음, 입학시켜 준 것이 다행

IV.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경험연구

연구결과

척수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의미	
분류	내용
심리적인 면	희망, 자신감, 장애적응과 수용, 장애분야 리더로서의 자신감, 장애계의 대표 당당함, 성취감, 이전과의 차별성, 안정감이 됨
지식적인 면	장애인사회에서 대학원 졸업은 고학력, 일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도움이 됨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생김
인간관계의 확대	신분의 상승, 외부의 시선이 달라짐, 가족들이 좋아함,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 짐, 인간관계가 넓어짐, 비장애인을 만나게 됨
기회의 확대	새로운 길, 양질의 일자리, 전문가로서 새로운 분야 도전, 기회의 확대, 학벌 사회 진입,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자립생활 가능	직업을 통해 소득이 늘어남,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됨, 내 생의 설계를 내 가 할 수 있게 됨, 고립과 의존에서 풀려고 자립적인 내가 됨

IV.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경험연구

연구결과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위한 개선점	
분류	내용
편의시설	기숙사1~2인사용 필요, 기숙사,강의실 척수장애인에 적합한 편의시설필요, 장애인주차장관리와 건물 사이 아케이드(arcade)필요
입학 및 학습지원	학교 내 장애학생 차별금지(학생회 등), 체육 특기생의 경우 복학이 안 됨 입학원서에서 특수교사의 추천, 대필지원필요(대학원)
인식개선	학교, 교수, 직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장애학생 매뉴얼제작 엘리베이터 이용양보
접근권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기차는 가능하나 시외버스 고속버스)
경제적 지원	장학금제도

V. 결론

-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교육기관 확대적용과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정책 이전의 학교생활 경험과 이후의 경험에서 편의시설과 관련한 진술에 차이가 있음
- 적수장애인의 고등교육은 중도장애라는 특성으로 학령기에 고등교육을 받는 경우보다 장애 이후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직업생활 중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재교육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적수장애인의 특성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고등교육에 어려움이 많음. 그럼에도 고등교육의 의미에 대한 진술에서 적수장애인의 장애 이후 고등교육이 사회복귀과정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적수장애 이후 전환재활서비스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재활체계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복귀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복지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적수장애인의 고등교육이 다른 전공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장애초기 적수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적극 추천 하겠다고 진술함

참고문헌

- 국립특수교육원(2012).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 보건복지부(2009). 장애인재활의료 서비스체계 개선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상은,이달엽(2011). 지체장애인의 고학력화가 직업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탐색. 한국지체부자유아연구, 54(4), 47~69.
- 조재훈(2009). 장애운동선수들의 고등교육 지원요건과 기회보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7(3), 285~310.
- 한국적수장애인협회(2012). 2012년 적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보고서. 한국적수장애인협회.
- 한국적수장애인협회(2015). 2015년 적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보고서. 한국적수장애인협회.

주제 : 척수장애인의 재활(사회복귀)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세션1 :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이유와 효과

세션2 : 고등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 모색

토론자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법인지원부장 이승일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의하면 학교교육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으로 구분된다.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²⁾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고등교육은 광복 후 크게 발전하였다. 1950년대의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팽창정책, 1960년대에 와서는 억제일변도의 정책,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거치면서 ‘교육모범국’으로 자리 잡았다.

1995년도 이후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 신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중요시 되어 장애인 특례입학이 실시되었고, 2002년도 한국재활복지대학이 설립되었다. 대학 교육은 지적 인재를 양성할 뿐 아니라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은 장애인이 그 사회의 문화적 엘리트로서, 또는 전문직 종사자로 양성될 수

2) 인간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 대한민국의 국조(國祖)인 단군(檀君)의 건국이념이자 정교(政敎-정치와 종교)의 최고 이념이며, 또한 교육이념이다.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기능주의와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척수장애인들은 ‘일상의 삶’을 살기위해 오늘도 밤낮으로 면학에 열중하고 있다.

발제문은 척수장애인의 이해와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경험 연구를 통해 척수장애인의 재활과정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이에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척수장애인의 재활과정에서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척수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뿐이다. 2014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학자금 대출(연1%)이 있었는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산업재해자 자녀 등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제한을 두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대략 400~500만원 정도로, 4년 동안 순수 학비만 3,200만원~4,000만원이 들어간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생활비 등 총 1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2012년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에 의하면 척수장애인의 임금은 50만원 미만(5.0%), 50만원~99만원(6.3%), 100만원~149만원(6.9%), 150만원~199만원(3.3%), 200만원~299만원(2.6%), 300만원~499만원(1.7%), 500만원~999만원(0.7%)로 비해당자 219명과 무응답자 4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척

수장애인들(응답자 20/35명, 57.1%)의 임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중도, 중증, 중복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에게 교육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척수장애인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척수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학생지원 전담조직의 전문 인력 확대와 인적·물리적 환경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물리적 환경이 아닐까 싶다. 척수장애인들은 이동을 할 때 목적지에 장애인전용주차장,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등이 설치되어 있을까 하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된다. 전화로 사전 문의도 해보지만 비장애인의 답변만 믿고 현장에 가면 항상 실망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지형적으로 경사가 급하고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척수장애인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수도권 172개교, 충청·강원권 85개교, 호남·제주권 62개교, 영남권 87개교, 총 406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 센터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 지원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센터가 장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독립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 교육센터 등을 통해 대학

및 대학 구성원의 정기적인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와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와 문화적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자!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시장이 형성되면서 교육 국제화가 촉진되고 학생 이동, 프로그램·기관 간 파트너십 등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단기 방문 프로그램, 교환 학생, 유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부와 연구에 매진할 대학을 찾아다닌다. UNESCO에서는 2020년 전 세계 유학생 수가 450만명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교육부, 2013).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 수는 ‘11년 8만9천명에서 ’ 15년에는 9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10만 명을 넘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다. 바야흐로 고등교육 시장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외국유학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받아 글로벌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역량강화에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는 모 그룹 총수의 말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뻗어나가는 척수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재직중인 척수장애인의 학력>

소속	직위	이름(척수유형)	재학/수료/졸업	외국어	기타
-	사무총장	이**(흉수)	대학원 졸업	영어, 일어	석사

사업본부	본부장	임**(홍수)	대학 졸업	-	학사
법인지원부	부장	이**(홍수)	대학원 졸업	일어	석사, 일본유학
	대리	노**(경수)	대학 재학	-	-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센터장	김**(경수)	대학 졸업	영어	학사, 미국유학
인식개선 교육센터	센터장	최**(경수)	대학원 수료	영어	박사 논문 준비 중
	대리	김**(홍수)	대학원 재학	-	석사

척수장애인은 대부분이 중도·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애 유형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도전과 경험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척수장애의 많은 문제점을 세상에 알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나’가 되길 기대해보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

한국고등교육재단 홈페이지 <http://www.kfas.or.kr/>

교육부(2013),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

교육과학기술부(201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GUIDE BOOK I-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일반」

한국척수장애인협회(2012), 「2012년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2012),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김양수. 2000. “장애인 관점에서의 고등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칼럼.

배상훈. “한국 대학이 당면한 고등교육 환경과 대응 전략”. 대학교
육 제189호.

백위열. “특수 교육 대상자의 대학 입학 정책”. 대학교육

장애인의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적 과제

IPC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준비단장 이재식

1. 서론

고등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터득하는 학교 교육의 최종 단계로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을 말하며 고등교육의 일반적 목적은 전문지식의 습득을 포함한 인격 성숙의 기회이자 사회적으로는 인재양성의 통로라 할 수 있으나 장애인에게 있어 고등교육의 접근은 차별 받지 않는 기회의 제공과 한 사회의 통합을 가늠하는 평등 교육의 척도라 말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1995년 장애인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시행한 이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시 원년인 1995년도에 8개교의 113명의 학생이 입학하였으나 최근의 2014년도에는 121개교 721명이 입학하여 약 20년 동안 113개교 608명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다(교육부, 2014)

2. 본론

발제자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2015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적 장애유형의 학력에 비해 척수장애인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조사 되었으나 척수장애인의 고학력 비율

에 반하여 중증·중복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직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장애 이후의 직업을 갖기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의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고등교육이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계획되어진 꿈을 이루기 위한 능동적 학습행위이기에 우리 척수장애인에게도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아실현의 통로로써 고등교육이 자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발제자의 지적처럼 장애인(장애학생)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가 있는 이유로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에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 내에서 몇 가지 교육복지가 실현되거나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의 법률적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첫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특별위원회)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일 경우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과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그 밖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가 있어도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완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장애학생의 학습권 및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관한 교수학습 지원, 장학금 지급, 장애인 기숙사 운영, 생활복지 지원, 장애 특성별 편의시설 지원, 학업 및 생활상담, 취업상담, 직업재활과 관련된 상담진로 지원을 수행한다.

셋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편의제공 등)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 등의 물적 지원과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그리고 취학의 편의와 정보접근을 지원하며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장애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3. 결론

장애학생이 대학생할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인 제한이나 한계가 아니라 적절한 복지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데 있으며 장애학생이 교육복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학업 부적응, 중도탈락률 증가, 미취업 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동시에 장애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대학 선택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장애학생이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소통과 평등이라는 원칙을 구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의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사회적 호응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척수장애인 사회복귀과정에서의 고등교육의 역할

전라북도척수장애인협회장 한승길

1. 들어가는 말

장애인 재활의 최종 목적을 사회복귀로 볼 때 온전한 사회복귀의 전제는 장애 이전의 자리, 곧 역할과 일상으로의 복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에는 많은 장애 요인이 있으며, 이는 발제자가 ‘2012년 척수장애인실태조사’를 인용하여 밝힌 장애 이후 척수장애인인 겪는 어려움에서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활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 전환서비스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에의 복귀조차 어렵고 힘든 현실이다.

2. 고등교육이 척수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

발제자는 ‘척수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의미’라는 쪽지에서 심리적인 면, 지식적인 면, 인간관계의 확대, 기회의 확대, 자립생활 가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 가운데 기회의 확대에 주목한다. 일반사회에서도 고등교육은 상류사회의 필수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장애인 특히 최종증 장애인인 척수장애인이 소위 주류사회(메인 스트림)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고등교육을 들 수 있다. 고등교육을 통한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로의 입지는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회 주류이기 때문이다.

3.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에 관한 제언

1)고등교육의 다변화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척수장애인의 전공분야가 복지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현실에서 인식과 제도, 편의시설 등의 문제라고 본다. 미국에서 척수장애인이 의사로, 검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척수장애인이라고 직업의 분야가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척수장애인도 어느 분야에서나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 어느 분야나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교육여건의 정비

척수장애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어려움과 한계를 보완해줄 편의시설과 보장구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희망을 접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이나 척수장애인이 가능한 아르바이트의 발굴과 시행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척수장애인의 직업개발

척수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직업의 개발은 이를 위한 고등교육으로 연계되어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으로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1년 남연희, 김영삼, 한승길의 ‘척수장애인의 직업경험을 통한 성공요인의 분석’이라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척수장애인의 직업을 위한 자기개발을 직업성공 요인으로 들고 있다. 즉 자기개

받은 직업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안정화시킴을 보여준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의 직업개발은 직업을 통한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 직업에 적합한 고등교육은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며 척수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충남도의회의원 김 연

1. 들어가며

척수장애는 주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낙상 등의 외상에 의해 발생하며,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후천적 장애이다. 척수장애인은 신체적 기능이 떨어져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제한되며, 직업의 상실과 경제적 능력 등의 저하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특히 후천적 장애로 인해 장애 후 신체기능의 적응은 물론 사회, 심리적 적응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관련 연구결과들은 척수장애인은 중도장애인의 특징을 가지며, 심리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신체활동의 무력감,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적 행동, 죄의식, 장애에 대한 부정, 학습된 무기력 등의 문제를 가지며,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을 어렵게 하여 이후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척수장애인 대부분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생산연령층의 남성이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볼 때, 사회복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장애 이후 사회복귀 기간이 미국의 경우는 평균 3개월, 유럽의 경우는 평균 6개월이 소요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더 긴 재활기간을 거치게 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개인적 이유이든 사회구조적인 이유에서든 또는 개인과 사회환경 등의 복합적인 이유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권리, 기회, 자원을 박탈하거나 상실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켜주는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장애인에게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복귀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척수장애인의 환경과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연구대상자의 성별, 종교의 차이가 임파워먼트에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고,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사회복귀가 높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척수장애인에게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는 고등교육은 사회복귀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척수장애인의 대부분이 성인 연령대임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평생학습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2.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평생학습은 생의 수단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학습은 생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장애인들의 경우는 심리적·지적·신체적, 그리고 환경적인 장애 때문에 생의 목표를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장애인에게 있어 배운다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응용하려는 소망과 그 자체가 주는 보람에서 느끼는 행복추구가 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의 평생학습은 재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재활의 종류는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로 볼 때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육과 직업재활은 동일차원의 재활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재활은 학교 교육을 의미하며, 직업재활은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대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또는 계속교육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교육은 학교교육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평생학습은 중요한 재활의 수단 그 자체이다.

셋째,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은 장애인복지가 성취된 현실적 완성도이다. 장애인의 평생학습이 보장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복지가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모든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복지는 일방적인 사회의 차원에서 머무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학습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행복추구권이며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의 완성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평생교육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장애인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은 직장과 여가를 포함한 삶 자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3. 나오며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는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들을 대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교육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앞서 발제자는 척수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나타나는 어려움을 신체적인 면, 심리적인 면, 접근성, 경제적인 면, 인간관계, 장애인식 등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원의 인적, 물적 환경개선과 학습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